

부 산 가 정 법 원

제 3 가 사 부

심 판

사 건 2016느합200027 상속재산분할

청 구 인 갑 (1949년생, 여)

주소

소송대리인 변호사

상 대 방 1. 을 (1935년생, 여)

주소 부산

2. 병 (1941년생, 여)

주소 부산

3. 정 (1944년생, 여)

주소 경남

4. 무 (1959년생, 여)

주소 부산

5. 기 (1960년생)

주소 진주시

6. 경 (1963년생, 여)

주소 부산

7. 신 (1969년생, 여)

주소 부산

주 문

1. 피상속인 망 이00(1952년생, 남)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%로 정한다.
2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탁금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.
3. 청구인은 상대방 을, 병, 정에게 각 149,072,419원, 상대방 무, 기, 경, 신에게 각 37,268,1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심판비용 중 감정비용은 청구인, 상대방 을, 병, 정이 각 4/20, 상대방 무, 기, 경, 신이 각 1/20씩 부담하고,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상속인 망 이00(이하 '피상속인'이라 한다)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%로 정한다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. 별지2 목록 기재 제1항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상대방 을, 병은 각 58,274,213/233,096,850의 지분, 상대방 정은 58,274,212/233,096,850의 지분, 상대방 무, 기, 경, 신은 각 14,568,553/233,096,850의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, 별지2 목록 기재 제2항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상대방 을, 병, 정은 각 365,162/1,460,650의 지분, 상대방 무, 기, 경, 신은 각 91,291/1,460,650원의 지분의 비

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. 청구인은 상대방 을, 병, 정에게 각 41,458,933원을, 상대방 무, 기, 경, 신에게 각 10,364,733원을 지급한다.

이 유

1.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

가. 피상속인의 사망일자: 2015. 7. 13.

나. 피상속인의 가족관계

(1) 배우자 : 없음

(2) 직계비속 : 없음

(3) 직계존속 : 망 이00(1958. 사망), 망 김00(2006. 사망)

(4) 형제자매 : 청구인, 망 이**(2012. 사망하였고, 직계비속으로 상대방 무, 기, 경, 신이 있음), 상대방 을, 병, 정

다.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

청구인과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,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청구인, 상대방 을, 병, 정이 각 4/20 지분이고, 상대방 무, 기, 경, 신이 각 1/20 지분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심문 전체의 취지

2.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

가. 갑 제3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***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

지2 목록 기재 공탁금(이하 '이 사건 각 공탁금'이라 한다)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고, 그 가액의 합계는 993,816,130원(= 759,258,630원(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) + 234,557,500원(이 사건 각 공탁금 합계))이다.

나.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,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일부를 수리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는 766,425,58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청구인의 기여분

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상속인이 2012. 4.경 보행 장애를 겪게 되고 2012. 11.경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(일명 '루게릭병')의 진단을 받게 되자,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2015. 7. 13.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점,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지켜 본 상대방 병, 정도 청구인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아울러 청구인의 기여의 시기, 방법, 정도, 상속재산의 가액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, 기여분을 25%로 정하기로 한다.

4.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

가. 간주상속재산(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 = 상속재산 - 기여분 + 특별수익(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은 없다)

항목	금액
상속재산	993,816,130원
기여분	248,454,032원(= 993,816,130원 × 25%)
간주상속재산 합계	745,362,098원

나. 구체적 상속분

(1) 법정 상속분액 = 간주상속재산 합계 ×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지분

(2) 구체적 상속분액 =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액 + 상속인별 기여분

구분	법정상속분액	상속인별 기여분	구체적 상속분액
청구인	149,072,419원	248,454,032원	397,526,451원
상대방 을	149,072,419원		149,072,419원
상대방 병	149,072,419원		149,072,419원
상대방 정	149,072,419원		149,072,419원
상대방 무	37,268,104원		37,268,104원
상대방 기	37,268,104원		37,268,104원
상대방 경	37,268,104원		37,268,104원
상대방 신	37,268,104원		37,268,104원

5. 분할방법

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희망하고, 상대방 병, 정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,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탁금을 소유하고 상대방들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이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,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청구인들과 상대방 무, 기, 경, 신 사이에 다툼이 심한 바, 이 사건 분쟁을 일회적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청구인이 이 사

건 각 부동산 및 공탁금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대방들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.

6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탁금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, 청구인은 상대방 을, 병, 정에게 각 149,072,419원, 상대방 무, 기, 경, 신에게 각 37,268,1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.

2017. 9. 26.

재판장 판사 천 증 호

 판사 이 미 정

 판사 이 호 철

별지1

목록

순번	부동산	시가
1	사천시 이하 생략	110,317,000원
2	사천시 이하 생략	73,616,000원
3	사천시 이하 생략	68,952,000원
4	사천시 이하 생략	
5	3, 4번 지상 건물 이하 생략	981,900원
6	사천시 이하 생략	232,927,000원
7	사천시 이하 생략	87,156,000원
8	사천시 이하 생략	182,466,000원
9	사천시 지상 건물 이하 생략	2,842,730원
합계		759,258,630원

끝.

별지2

목록

1. 공탁번호 :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년 금 제000호, 공탁자 : 사천시, 피공탁자 : 이00, 공탁금액 : 233,096,850원
2. 공탁번호 :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년 금 제0000호, 공탁자 : 사천시, 피공탁자 : 이00, 공탁금액 : 1,460,650원. 끝.